

제천시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05.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 11. 08.
다. 상정일자 : 2010. 11. 10.(제17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3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10.3.31 공포, ’ 11.1.1 시행)됨에 따라
- 현 시세 조례중 지방세 기본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 신설코자함.

나.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에서는 용어의 정의, 지방세목, 납기연장, 서류의 송달방법등 시세 조례에서 이관된 지방세에 관한 통칙규정을 반영 (안제1조내지 제9조)
 - 세목 귀속체계 재편(도시계획세, 주행세) 및 폐지된 세목(도축세)을 반영하여 재편성
- 제2장에서는 현행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사항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 (안 제10조 내지 제25조)
- 제3장에서는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압류처분, 회생절차중의 체납처분등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6조내지 제46조)
- 제4장 보칙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47조내지 제51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완식)

-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10.3.31 공포, ’ 11.1.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시세 조례중 지방세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세조례, 부과징수 규칙

4) 현행 「지방세법」 제1장 총칙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분리시킨 것으로 기존에 「국세기본법」등을 준용하고 있던 통칙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한편, 수장신고제도 개선, 기한후 신고대상확대,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근거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총 6장 147개 조로 구성 되어 있음

- 중 통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주요내용은
- 제1장은 지방세에 관한 통칙규정을 반영하고
 - 제2장은 부과징수에 관하여
 - 제3장은 체납처분에 관하여
 - 제4장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확장, 소멸등 조세채권의 발생 및 변화단계별로 배치하여 시민들과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였음
 - 조례안중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설·개선조치로서
 -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등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미환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제13조)
 -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가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납부한 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안제34조)
 - 또한 현행조례에서는 지방세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심의 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등 3개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토 록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3개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토록함으로써, 지방세정책의 일관성과 효 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음(안제47조내지제51조)
 -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3127호, 10.9.28)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답변자 : 세정과장)

“없 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심사보고 불입서류

- 제천시세 기본 조례안 1부. 끝.